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Policy)

소관부서: 법무지원실

Version: 3.0

시행일: 2018 년 9 월 7 일



THE REAL LIFE
COMPANY

사규 이력

사규 명칭	[P-2018-004] 지배구조내부규범 (Internal Corporate Governance Policy)
사규 버전	3.0
사규 소관부서	법무지원실
사규 소관부서 부서장	법무지원실 박정진 전무
사규 소관부서 담당자	법무지원실 유경원 과장
사규 제정일자	2017.12.1.
사규 최종 승인일자	2018.9.7.
사규 시행일자	2018.9.7.
사규 유형 <i>(Per Standards for Corporate Policy Governance)</i>	규정
사규 승인자	이사회
사규 검토 빈도	연 1 회 (관련 법규 등 개정 시 즉시)
향후 검토 일정	매년
문서 정보 등급 <i>(Per AIA Group Information Security Framework)</i>	Restricted
관련 법령 또는 사규(그룹, AIA 생명 포함)	

제·개정 이력

버전	제·개정내용	승인 일자	승인자	시행일자
1.0	제정	2017.12.1.	이사회	2017.12.1.
2.0	제 4 조 제 1 항 변경	2018.1.31.	이사회	2018.1.31.
3.0	제 24 조 변경	2018.9.7.	이사회	2018.9.7.

DISTRIBUTION LIST

TITLES
에이아이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임직원

목 차

제 1 장 총 칙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정의).....	6
제 2 장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 1 절 이사회의 구성현황.....	6
제 3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선임).....	6
제 4 조 (이사회 의장).....	6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7
제 5 조 (이사의 자격요건).....	7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8
제 6 조 (이사회의 결의 및 보고사항).....	8
제 7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9
제 8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9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10
제 9 조 (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10
제 10 조 (이사직의 퇴임의 기준 및 절차).....	10
제 5 절 이사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11
제 11 조 (이사회의 소집절차).....	11
제 12 조 (의결권 행사방법).....	11
제 6 절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제 13 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 1 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2
제 14 조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12
제 15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3
제 16 조 (감사위원회).....	14
제 17 조 (위험관리위원회).....	15
제 18 조 (보수위원회).....	15
제 2 절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16
제 19 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16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16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16
제 20 조 (임원의 자격요건) 16

제 2 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17
제 21 조 (대표이사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17
제 22 조 (감사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준수사항) 17
제 23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18

제 3 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18
제 24 조 (임원의 선임) 18
제 25 조 (임원의 퇴임 등) 19
제 26 조 (승계 계획) 19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19
제 27 조 (임원에 대한 교육) 19
제 28 조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20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20
제 29 조 (임원 성과평가) 20
제 30 조 (임원의 보수) 20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21

제 1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21
제 31 조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1
제 32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21
제 33 조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 22

제 2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22
제 34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22

제 3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22
제 35 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자격검증 및 관리 방법) 23

제 4 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23
제 36 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23

제 5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23
제 37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23

부칙 24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 14 조에 따라 AIA Life Insurance Co. Ltd. (이하 “회사”)가 주주와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임원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임원 성과 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경영 승계 등과 관련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 또는 “이 규범”)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된 용어는 달리 정의되지 아니하는 한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의미를 갖는다.

제 2 장 이사회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와 운영 현황

제 3 조 (이사회와 운영 현황)

- ① 이사회는 이사 3 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사외이사는 3 명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이사회가 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인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이사회 의장)

-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1 인의 이사를 이사회 의장(이하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다.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 의장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이사회 의장의 유고 등으로 새로 선임된 이사회 의장의 임기도 이와 동일하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고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거나 출석이사의 과반수 투표로 의장을 선임한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 경영진 등 임직원으로부터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④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 3 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이사의 자격요건

제 5 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이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으며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 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법률 등 관련분야에서 충분한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사외이사로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4.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

제 3 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 6 조 (이사회 결의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및 변경,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10. 중요 계약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 및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②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이사회 결의 사항의 집행결과 및 그 실적
 2.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3.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 등 내부 규정에서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정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 1, 2 항의 심의·의결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8 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이사는 경영진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 등 활동을 위해 법률·회계·경영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장된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및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⑥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이사가 본조 및 법령이나 정관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하여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4 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9 조 (이사 선임의 기준 및 절차)

- ①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1. 대표이사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의 범위로 한다.
 3. 사외이사의 임기는 3 년 이내로 하되 연임 시 임기는 3 년 이내로 한다.
 4. 사외이사는 연속하여 6 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③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외이사가 연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 10 조 (이사직의 퇴임의 기준 및 절차)

-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의원 사직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정관, 회사 규정에서 정한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사실 또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등 이사로서 신분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된 경우

② 이사의 퇴임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주주총회 또는 차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발생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을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 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 11 조 (이사회 의 소집절차)

①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 회,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사회 의장, 이사 과반수, 감사위원회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소집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의장 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소집목적 을 기재한 통지서를 안건 및 관련자료와 함께 각 이사에게 모사전송, 전보,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인터넷 E-mail 등) 등으로 통지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2 조 (의결권 행사방법)

① 이사회 의 의결은 관련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대한민국 내외의 어느 곳에서도 개최될 수 있으며,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절 이사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이사회 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규정과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한다.

② 이사회는 제 1 항에 따라 심의한 평가결과를 이사회 의 운영 및 사외이사 재선임에 참고한다.

③ 위 평가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1 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 14 조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 ②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③ 감사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한다.
- ④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을 의미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을 선임함에 있어 그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2. 기타 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⑥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 33 조 제 1 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단, 해당 후보가 지배구조법 기타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 중 1 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2.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4. 임시이사회 소집 청구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6.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내부 감사업무 담당부서 설치, 관리 등

7. 내부 감사업무 담당 임원 및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8.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

9. 감사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0. 기타 관련 법령, 정관, 회사 규정에서 정하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연 4 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기타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 17 조 (위험관리위원회)

- ① 위험관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③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허용한도의 설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위험관리기준의 제·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험관리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18 조 (보수위원회)

- ① 보수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③ 보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및 지급 방식
 2. 제 1 호의 자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적정성 평가
 3. 보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4.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관련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수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수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연간 활동내역을 기초로 구성, 운영,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 1 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주체, 방법, 절차, 지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이사회는 평가결과 및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 1 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 20 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본 장에서 "임원"이라 함은 지배구조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라 이사, 감사위원,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한다.

②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 5 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단,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직을 잃는다.

③ 준법감시인은 제 2 항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외에 지배구조법 제 26 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그 직을 잃는다.

④ 위험관리책임자는 제 2 항의 임원으로서의 자격요건 외에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지배구조법 제 28 조 제 3 항 제 1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그 직을 잃는다.

제 2 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제 21 조 (대표이사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 결의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정한 방향에 따라 회사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③ 제 2.3.3.조 제 7 항의 책임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 22 조 (감사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준수사항)

-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감사를 목적으로 한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 3.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 (업무집행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 ① 업무집행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부여한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업무 일체를 관장하며 담당직무에 상응하는 전결권을 행사한다.
- ② 업무집행책임자는 담당 직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및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 24 조 (임원의 선임)

- ① 사규 및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임기, 연임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원 선임 및 연임 시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상 임원 결격사유가 없고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임면한다.
- ④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제 25 조 (임원의 퇴임 등)

① 정관 및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하며 제 4 호 및 제 5 호의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임기 만료

2. 사직원 제출

3. 회사 인사규정 상 당연퇴직 사유

4. 회사 인사규정 상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하여 면직되는 경우

5.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4.3.1.조 제 3 항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승계 계획)

회사는 대표이사 등의 궐위 시 업무대행 및 승계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인재 검토를 통하여 승계 계획을 수립하며, 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업무대행 및 승계가 결정된 각 후보자는 개별 분석 및 역량 검토에 따라 전략적인 개별 육성계획을 수립 및 실행한다.

제 4 절 임원 및 그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제도

제 27 조 (임원에 대한 교육)

①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에서 정한 집합 또는 사이버 과정 등 필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원 중 선발된 자에 한하여 외부위탁 파견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8 조 (임원후보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매년 임원후보자 중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사내 또는 사외 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연수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5 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

제 29 조 (임원 성과평가)

- ① 임원(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 이하 본 절에서 같다)에 대한 성과 평가는 년 1 회 실시하며, 해당 평가 결과는 성과급의 지급 및 연임 결정 등에 반영되도록 한다
- ② 성과평가의 대상, 절차 및 기준, 성과급 등 보상의 체계 등은 임원의 직급과 담당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 30 조 (임원의 보수)

-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급으로 구분한다.
- ② 임원에 대한 성과급은 제 4.5.1.조의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보수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임원의 보수 중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비율, 성과급 중 이연되는 비율 및 이연기간, 지급방식 등은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의 정도, 업무의 투자성 및 존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 1 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 31 조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또는 관련 내부규정(이하 "경영승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운영한다.
- ② 제 1 항의 경영승계 계획 등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최고경영자의 최소한의 자격요건
 - 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 3.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 4.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 5. 최고경영자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시 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 6. 그 밖에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이사회는 위 경영승계 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제 1 항의 경영승계 계획 등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제 32 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 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시될 수 있다.
 - 1. 임기 만료
 - 2. 중도 사임
 - 3.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나 기타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 4. 형벌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사망,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유고 상황으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1 항의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이 규범에 따라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고경영자 후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에 한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선임시까지의 최고경영자 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 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제 33 조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이 규범 제 5.1.2.조 제 1 항의 경영승계 사유 중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갑작스런 최고경영자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규범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 2 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 34 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지배구조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 3 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 35 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자격검증 및 관리 방법)

-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한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해 매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 36 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 5 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 37 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 ①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임기는 제 2.4.1.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라 정하며, 그 선임 및 퇴임 관련 사항은 제 2.4.1.조 및 제 2.4.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최고경영자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 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범은 2018 년 9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규범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상의 적용례, 경과조치 등에 따라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시행일자 및 적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